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 | |
|----------|------|
| 의안 번호 | 2322 |
|----------|------|

제안년월일 : 2017년 12월 18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7년 10월 16일 김용석(도봉)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10), 2017년 11월 6일 김선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20), 2017년 11월 13일 김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56), 이상 3건을 제277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2017.12.18)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해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3개월 동안 활동하지 않는 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활동기한 이내라도 본회의 의결로 그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중간보고서와 연장 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의장이 활동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특별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따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규정이 없어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결과 파악이 어려움. 이에 시장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의회의 충분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에서 60일 전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신설).
- 의장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37조제7항).
-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7조제8항).
- 시장 또는 교육감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7항 신설).
-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시장 또는 교육감에 대한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신설).
-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55조의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3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7항을 제8항으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⑧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운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서류제출요구) 의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의2의 제목 “(예산집행상황의 등의 제출)”을 “(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정안 |
|--|--|
| <p>제37조(특별위원회) ① ~ ③ (생략)</p> <p><신설></p> <p>④ (생략)</p> <p>⑤ (생략)</p> <p>⑥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u>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u>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 <p>제37조(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⑦ ----- ---- <u>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u></p> <p>⑧ ----- -----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
| <p>제50조(시정질문) ① ~ ⑥ (생략)</p> <p><신설></p> <p>⑦ (생략)</p> | <p>제50조(시정질문)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⑧ (현행 제7항과 같음)</p> |
| <p>제55조의2(예산집행상황의 등의 제출) <신설></p> <p>①·② (생략)</p> | <p>제55조의2(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p> |
| <p>제53조의2(서류제출요구) 의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 <p>제53조의2(서류제출요구) 의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